[] 허가 토석채취 [] 변경허가 신청서 [] 기간연장허가

(앞쪽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일			1 1.	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(변경허가)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				0일 일
신청인	성명							생년	생년월일				
	주소								전화번호				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											
산 지 소유자	성명							생년	생년월일				
	주소							전호	전화번호				
산지 소재지													
산지편입 면적	토석채취장	석채취장 계 신			부대시설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		관리사	무소	그 밖의	시설	완충	구역
	m²		m²		m²		m²		m²	., .	m²		m²
토석채취 • 반출기간	입목벌채 (굴취)기간												
토석채취 계 획	용도 토		토석의 종류					신청량				채취방법	
					매장량		가채매 m³				ぎ ㎡		
입목벌채	벌채구역면적 니			·무의 종류			본수				재적		
	글제구작한역 년 m²			1-1011				본			17	m³	
변경사항	변경	변경 후					사 유						
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 1항·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[]허가 []변경허가 []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 니다.													
										년	1	월	일
신경								신청인			(서명 되	트는 인)
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													
첨부서류 	뒤쪽 참조												

- 1. 토석채취허가신청
- 가. 사업계획서{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, 채취방법,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(석재에 한정합니다), 토석처리계획 (석재에 한정합니다), 연차별 생산·이용계획,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} 1부
- 나.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야 합니다) 1부
- 다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라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
- 마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・공예용・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・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
- 바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 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「산지관리법 시행 령」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
- 사.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(이하 "일 반측량업자등"이라 합니다)가 측량한 구적도(求積圖) 1부
- 아.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산림조사서(숲의 종류, 임상, 나 무의 종류, 숲의 나이, 평균나무높이, 입목축적을 포함하고,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 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

자.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

- 차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·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
- 카.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(「산지관리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
- 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(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) 1부.
- 1)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사・토목기사・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2.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: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3.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
- 가.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야 합니다) 1부
- 나.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
- 다.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·축산시설의 소유자, 주민(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), 공장의 소유자·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
- 1. 토석채취허가신청
- 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2만원

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

- 2.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: 없음 3.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: 없음
-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처리절차 현지 추가복구비 추가복구비 추가복구비 허가증 허가증 신청서 --▶ 접 수 조사 예치 통지 작성 발급 산정 예치 담당부서 신청인 신청인 담당부서

첨부서류

수수료